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09. 8. 17. 개정 2010. 6. 7. 전면개정 2012. 2. 27.

개정 2013. 9. 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3조의3 및 「공공기관의 회계 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」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진흥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
- 2. 감사인의 변경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진흥원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.
 - ② 위원회는 제반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, 정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소집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[별지 제1호] 위원회 안건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.
- ③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록)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 한다.

- 1. 회의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- 3. 의결사항
- 4. 기타 중요사항

부 칙

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> 감사인선임위원회 안건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일자	· · · (제 회)

의 결 사 항

안건명 : _____(안)

제 안 자	
제안일자	